

자동계좌이체 약관

제1조(약관의 적용)

지로 자동계좌이체제도(이하 “자동이체”라 한다)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납부자”라 한다)와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(영업일)

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.

1.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
2. 토요일
3. 근로자의 날

제 3 조(출금)

① 납부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(이하 “이용기관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납기일(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)에 출금 대체 납부합니다.

② 제 1 항의 경우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.

제 4 조(과실책임)

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, 예금의 지급제한,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제 5 조(부분출금)

부분출금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,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.

제 6 조(출금우선순위)

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한 <별첨>자동이체출금우선순위에 따릅니다.

제 7 조(최초 개시일)

자동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.

제 8 조(자동이체 신청)

은행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
1.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(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
2.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게 전달(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방법

제 9 조(신청서 제출기한)

제 8 조에 의한 자동이체(신규, 해지, 변경)신청시 해당 납기일 30 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자동이체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.

제 10 조(출금기준 및 이의제기)

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은행 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(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)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,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.

제 11 조(정보제공)

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(거래은행명, 지점명, 계좌번호,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등)가 이용기관에 제공되며, 제공된 정보는 동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12 조(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)

자동이체 등록계좌가 2 년 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은행은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 13 조(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)

제 8 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 14 조(약관의 변경)

-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과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부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,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,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본점과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(최소 1 개월 이상 게시)하여야 하고,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2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- ② 납부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동 기간 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제 15 조(다른 약관과의 관계)

-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-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.

별첨.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

- 1)요구불간자동이체
- 2)하나카드자동이체
- 3)여신상환
- 4)여신이자수입
- 5)지로자동이체
- 6)CMS자동이체
- 7)CMS자동이체(당일출금)
- 8)아파트관리비(금융결제원, 이지스효성)
- 9)월부금자동이체
- 10)편뱅킹자동이체
- 11)아파트관리비(일괄출금)
- 12)일일상환서비스원금
- 13)일일상환서비스이자

- ※ CMS자동이체(당일출금) 업무는13시에 처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자동이체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.
- ※ 편뱅킹자동이체는 업체에서 출금의뢰가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업체사정에 따라 자동이체우선순위가 아파트관리비(일괄출금)와 바뀔 수 있습니다.
- ※ 납부자자동이체는 금융결제원 파일전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20:00 에 1회만 처리되며, 부분이체는 불가합니다.
- ※ 18시 이후 입금시 자동이체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.